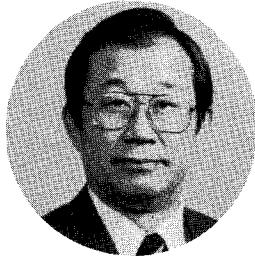


# 韓國의 에너지 資源 確保와 法律



본글은 1990년 10월 4일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시에서 개최된 LAWASIA 국제에너지법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국역한 것이다.

金 聖 洙

韓國에너지法研究所 所長

## 韓國에너지政策의 展開

韓國의 급속한 經濟成長은 1972年부터 1983年 사이에 GNP 성장을 평균 8.6%, 國民總生產額 751 億달러, 國民所得은 2,002달러에 이르렀다. 1989年에는 國民總生產量은 2,101億달러에 이르렀고, 國民당 소득은 4,986달러에 이르렀으며, 韓國開發研究院은 1991年부터 1995年 사이에 韓國의 經濟成長은 平均 7.5%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978年 世界에너지危機에 대비하여 動資部가 설립된 이래로 해마다 政策方向을 公表하고 있는데, 1990年 動資部의 政策方向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 및 資源 安定確保體制의 強化. (2) 에너지 產業 體質改善 및 技術開發을 통한 競爭力 제고. (3) 에너지價格의 안정적 管理. (4) 環境改善을 위한 깨끗한 에너지供給의 擴大. (5) 產業平和의 定着과 地域均衡發展의 촉진. (6) 海外資源 확보를 위한 國際活動의 강화. 이와 같은 動資部의 적극적인 에너지政策은 韓國의 經濟成長에 따른 에너지需要의 급격한 증가에 있다. 1962年부터 1983年 사이에 에너지需要의 증가는 國民總生產增加가 8.6%에 이르고 있음과 마찬가지로 평균 8.1%의 成長을 기록하고 있다. 이 統計는 이 기간중에 있어서의 에너지需要量이 5배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石油原油 供給 국가도 장기 계약체결 형태로 展開되었고, 그 숫자도 1977年에

는 3個國이었으나, 1987年에는 12個國으로 증가하였다. 1962年에는 原油의 比重은 전체 에너지供給의 10% 미만이었으나 1983年에는 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의 이라크사태와 같은 原油供給地인 中東事態의 情勢不安은 韓國經濟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韓國의 에너지政策은 世界에너지危機 이후에는 에너지공급의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최근의 低油價 상태로 인한 國際에너지市場에서의 변화는 韓國에너지政策 수립에 있어서 보다 융통성 있는 政策樹立을 요구하고 있다. 에너지供給의 安定性과 더불어 에너지의 效率性도 에너지需要供給 구조에 있어서 강조되고 있으며, 건전한 에너지수요 構造는 적정한 需要統制와 價格構造를 통하여 達成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과다한 政府의 價格統制, 에너지資源의 生產과 輸入에 대한 規制는 效率의in 에너지자원의 分配에 나쁜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分析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業界에 있어서의 건전한 市場經濟體制의 도입은 과다한 政府規制에서 發生하는 역효과기능을 감소시키고, 적절한 資源分配과 資本投資의 效率性을 향상시키고 있다. 물론 에너지가격의 갑작스런 급등이나 戰爭狀態로 인한 에너지자원 需要供給體制의 不均衡에 對備한 非常體制의 준비는 언제나 해 두어야 한다.

에너지資源의 節約運動은 최근에 점차로 활발해지고 있으며, 대체에너지의 開發과 에너지節約

型 産業構造로의 전향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에너지효율성의 向上과 節約의 努力은 地域暖房制度나 에너지技術의 향상과 같은 統合된 에너지供給構造의 發展을 통해서 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動資部의 에너지政策을 施行하기 위해서 에너지법의 制定과 改正이 계속되었다. 이와 같은 立法活動을 위해서 動資部, 研究所, 學界 및 法曹界의 協力과 研究結果의 交換은 더욱 강조되어 왔다.

### 에너지資源의 確保

#### 1. 石油와 천연가스

1988年에 韓國全體의 에너지수요중 47.4%는 石油에 의존하고 있음에 반하여 韓國은 石油의 賦存性이 아직 발견되지 아니하고 있다. 石油의 重要性은 더욱 강조될 수 밖에 없으며, 의존도도 점증하리라고 예상된다. 韓國의 原油輸入은 國內景氣쇠퇴로 原油輸入이 감소되는 1978년까지 年平均 8.8%의 增加率을 보였다. 韓國經濟가 급성장을 하기 시작하는 1983年 다시 原油의 輸入은 점증하기 시작하였다. 원유도입선의 多邊化를 위한 政府의 노력에 의해서 原油導入國家는 1981年에 12個國이었으나 1988年에는 22個國으로 늘어났다. 1980年 第2次 世界石油波動이 난 시점까지는 韓國의 原油輸入은 주로 長期契約에 의존하였으나 國際石油市場의 流動性으로 인하여 1988年에는 長期契約 아래서 수입되는 原油는 40%로 축소되었다. 더욱 中東地域과 인도네시아지역에서의 海外石油資源開發計劃에 의해서 投資償還 形式으로 도입되는 原油는 國內石油需要와 精油會社의 需要를 충족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韓國에너지정책이 石油依存度를 낮추기 위한 일환으로 천연가스의 이용을 권장해 왔고, 이로 인하여 1970年에는 24%의 증가율을 가져왔으며, 1980年에는 3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LPG가스의 所要量은 1982年에는 64만 메트릭톤, 1988年에는 220만 6천 메트릭톤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LNG의 수요는 1년에 2백만톤의 수요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1987年부터는 20年동안 인도네시아로

부터 輸入하도록 계약되었다. 1987年에 完工된 LNG收容基地 施設로 인하여 都市地域에 있어서의 家庭燃料도 LPG에서 LNG로 變化되는 과정에 놓여 있다. 1989年度에는 LNG 需要量이 2백만톤이지만, 2001年的 경우에는 5백만톤으로 增加할 예정이며, 그 이유는 빌딩과 產業施設에서의 冷·溫房의 가스需要의 發展과 全國的인 가스파이프라인 완공으로 인하여 輸送이 편리해진 까닭이다. 그 결과 海外油田開發計劃에서도 原油 이외에 천연가스 開發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

#### 2. 電力

1945年 이후 韓國에서의 電力開發事業의 成功의인 완성으로 인하여 1962年에는 367 메가와트의 수량에서 1988年에는 19,994 메가와트로 그 電力出力이 增加하였으며, 個人別 電力消耗量도 46/KWH에서 1,771/KWH로 증가하였고, 1988年度의 原子力發電은 電氣發電量의 49.6%에 이르렀다. 動資部는 無煙炭 에너지資源과 原子力發電은 장래 電氣에너지資源의 주축을 이루리라고 예전하고 있으나, 電力發電事業은 해마다 증가되는 經濟發展 狀況과 긴밀한 關係를 가지고 있으므로, 融通性있는 開發計劃을 樹立하여야 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 3. 石炭

1988年の 대한민국 無煙炭需要는 전체에너지수요의 15.8%에 이르렀고, 그중 89.4%는 家庭用이나 商業用으로 쓰여졌다. 1988年에 無煙炭의 需要是 석유중심 의존에도 불구하고, 1962年度의 721만6천톤에서 2,564만 천톤으로 增加하였으며, 이는 연 5.6%의 需要增加를 보여주고 있다. 作業條件의 불비에도 불구하고 점증하는 需要增加로 인하여 1970年代에는 油價引上으로 인하여 政府는 無煙炭을 輸入했었다. 최근에는 石炭으로부터 石油로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서 動資部는 石炭의 最大生産 보다는 적절한 生產으로 전환하는 政策을 수립하였으며, 政府에 의한 支援도 政府의 대여금으로 轉換되었다.

#### 4. 代替 및 新再生 에너지資源

만일 自然에너지資源, 化石에너지, 再生可能한 에너지가 最大限으로 가동될 수 있다면, 이 에너

지資源은 韓國에서도 주요한 에너지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 分野에 있어서의 技術開發은 國際協力を 통해서만이 달성이 가능하다. 韓國은 1987년에 新再生 에너지의 研究·開發을 위하여 대替에너지 開發增進法을 制定하였다. 動資部의 이와 같은 적극적인 에너지정책에 의거하여 태양에너지기술, 生物學的 에너지 資源技術, 山林에너지技術, 廢棄物處理에너지技術등이 基礎研究 水準에 까지 도달하였다. 政府計劃에 의거하면 이와 같은 技術開發은 新再生에너지源 供給率이 1987年度에는 0.18%에 불과하였으나, 1991年度에는 1%에 도달할 것이며 2001年度에는 3%까지 도달하리라고 예상하고 있다.

### 에너지法 發展과 立法政策

#### 1. 送油管事業法의 制定(1990年 1月 13日 法 第 4215號)

石油需要의 급증으로 인하여 石油輸送方法도 개선이 要求되었다. 한국에서의 텅크로리와 같은 自動車 輸送方法은 안정된 에너지공급 次元에서는 非經濟的이다. 따라서 送油管을 통한 石油의 輸送은 石油의 全國的인 分배가 요구되는 需要供給體制의 안정을 위해서 보다 經濟的이고 效果的이라는 観念을 받게 되었고, 그 送油管體制는 安전하게 建設되고 적절하게 유지될 필요성이 존재하게 된다. 이와 같은 送油管建設事業의 推進을 위하여 1990년 위 送油管事業法이 制定되었으며, 1990年 1月 21日 동 法律 아래서 大韓送油管會社가 설립되었다.

同法 第1條는 첫째, 送油管建設로 인하여 石油輸送이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도모하고, 同 法律아래서 동 施設이 公共安全을 도모하게 됨으로 인해서 國家經濟의 전진한 發展을 기대하는데 立法目的을 둔다고 規定되어 있다. 韓國送油管會社의 建設計劃書에 의하면 送油管建設費는 5,666億원이고(786.9백만 달러)동 工事計劃 중의 일부는 海外技術과 建設資材導入을 위하여 國제입찰을 예정하고 있다. 동 工事期間은 33個月 예정이므로 1990年 1月에 시작하여 1992年 8月에

완공될 것이며, 運營期間은 20年이상이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한국송유관사업법은 일본송유관사업의 構造와 性格이 매우 유사하나 한국송유관사업법은 送油管事業者의 利益保護를 중시하고 있으며, 動資部長官의 법령제정권한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차이가 있다. 또한 한국송유관사업법은 送油管의 建設과 安全運營에 관하여 동자부장관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에 반하여, 영미송유관사업법은 법자체에 建設과 運營에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점이 차이가 있다. 韓國送油管事業法과 韓國送油管株式會社는 한국내에 있어서의 에너지輸送體制에 큰 發展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소련의 시베리아나 중국의 흑룡강성에 있는 에너지자원 輸送을 위한 國際送油管事業의 基礎로써도 큰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 2. 적극적인 海外 및 韓國近海 油田開發計劃

韓國에서의 점증하는 國內 石油需要와 長期供給契約 아래서의 불충분한 原油供給은 政府와 企業에서 海外와 韓國近海에서의 石油資源開發을 적극적으로 진척시키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恒久的이고 安定된 石油供給의 努力은 1969年부터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자세로 인하여 최근의 이라크 전쟁의 사태는 韓國原油供給에 관한 한 1990年 말까지는 큰 영향을 받지 아니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990年 현재까지 한국의 企業들이나 政府投資會社에서는 인도네시아, 북예멘, 수단, 라일과 동글라, 미합중국 등지에 12개의 海外油田開發計劃에 資本持分 15%부터 51%까지 참여하고 있다. 1990年에도 2~3개의 새로운 開發計劃을 동자부는 承認할 예정으로 있다. 이와 같은 私企業의 海外油田開發計劃의 적극적인 참여는 政府가 주선한 法的, 行政적인 뒷받침이 있음으로써 가능한 것인 바, 그 내용은 石油事業基金으로부터의 資金支援과 會社法上의 稅金減免의 혜택이 있다.

1990年度까지 한반도의 大陸棚에서는 7개의 海上광구와 韓·日共同開發區域에서 15개의 海洋油田開發計劃을 1969年부터 진행시키고 있다. 한국측에서는 한국석유개발공사가 政府投資機關으로

서 參與하고 있으며, 海外開發參與社는(Texaco, Gulf, Shell, Hunt, Maraton, Japecs, Headson, BP 등이다) 海底探查에 대한 許可節次에서 韓國政府는 조광계약이나 生產分配契約은 일차적으로 한국에너지정책에 부응하는 國內優先供給 條項을 規定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近海油田開發計劃은 海底資源開發法에 의해서 政府가 支援을 계속하고 있다.

### 3.開放政策 아래서 外國資本의 에너지產業에 投資

에너지分野를 포함한 韓國의 產業에 대한 外國資本 投資를 유치하기 위하여 韓國政府는 10年동안의 所得稅 免除라는 特혜를 부여하거나 產業敷地를 提供하고 이윤의 送金을 保障하는 制度를 採擇해 왔다. 이와 같은 特혜 아래서 外國의 Gulf 會社나 Caltex, Union Oil 등은 石油精製를 위한 合作會社 形態의 精油會社를 설립해 왔다. 1988年 이전까지는 그와 같은 外國資本 投資는 韓國側에 유리한 保護裝置 아래서 이루어졌으나, 国내인플레이션 및 國際貿易 摩擦로 인하여 한국은 市場開放의 壓力과 더불어 國內產業 保護의 裝置를 제거시키는 방향으로 진척이 되었다.

1988年 이후 韓國政府는 外國資本投資를 資本市場에 대한 선택적 허가의 방향에서 점차 에너지산업을 포함한 生產分野와 에너지 分配領域을 포함한 서비스영역까지 완화시키는 政策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와같은 開放政策에 영향을 받아 韓國企業들은 生產施設을 海外로 이전하거나 소련과 중국과 같은 동구권을 포함한 새로운 市場開拓을 하기 시작했다. 韓國에서 유망한 에너지산업은 油田開發, 再生 가능한 에너지자원, 에너지기술용역, 태양에너지 및 廢棄物에너지등이다. 한국의 開放政策 아래서 영향받은 法律과 規定의 개정은 에너지 산업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됨으로 이들 變更內容은 다음과 같다. (1) 合作法人이 株式市場에 공개될 수 있는 特權. (2) 合作法人으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事業範圍 규제에 대한 완화. (3) 合作法人의 輸入活動의 확장. (4) 技術導入 허가요건의 완화. (5) 韓國내에 소재하는 外國企業 지점의 外換送金 규제의 완화. (6) 國際契約에 있어

서 不公正去來 조항에 대한 政府檢查基準의 완화 등이다.

### 4. 에너지法律의 적극적인 改正

1988年부터 새로운 에너지法律을 制定하거나 개정하기 위한 노력과 행정부 行令변경의 노력이 있었다. 적극적인 에너지법령의 改正動機는 에너지資源의 開發, 分配 및 節約에 대한 共同補助의 노력이 증가하는데 있다. 그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集團에너지事業法의 制定案－집단에너지에 관련한 설치의 편의 및 稅制惠澤. (2) 農漁村 電氣事業法의 改正－1995年까지 농어촌 實情에 맞는 電力資源開發計劃 完成. (3) 發電所周邊地域支援法에 관한 大統領令－原子力發電所周邊 住民의 福祉向上을 통한 核에너지 공포감의 상쇄. (4) 海外資源開發法의 改正－海外資源開發에 사용된 資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稅制惠澤. 이와 같은 한국에서의 적극적인 에너지立法活動은 技術移轉과 金融支援을 통한 國際協力의 보다 활발한 증진을 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 結語

국제에너지자원 分野에서는 生產을 주도하는 입장과 環境을 保護하려는 입장 사이에 있어서 균형점을 發見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도 國內的으로나 國際的으로 이와 같은 균형점을 추구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國家중의 하나이다. 오늘날 한국은 自國의 에너지產業市場을 이웃 국가들에게 開放하면서 이들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法的裝置를 開發하였고, 에너지生產과 節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韓國의 에너지정책과 法律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보다 나은 에너지자원 management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이다. 人類文明의 生存을 가름하는 基本要素인 環境問題, 食糧資源과 더불어 에너지자원은 끊임없는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 에너지資源과 에너지法에 관한 研究의 결실은 人類의 繁榮과 文化的發展을 가져오리라 믿는다.